

「구미시 보건소·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수수료 등 징수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여 수수료 부과·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수수료 부과 개별기준 수정(안 별표)
 -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이 개정됨에 따라
조례로 위임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(구.보건증)
수수료 부과 기준 신설
 - 건당 수수료 3,000원 부과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의 개정(2023. 11. 22.)으로 제증명발급 수수료의 부과·징수 근거를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제5조¹⁾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의 부과가 조례로 위임되어 위임사항을 개정하였으며, 부칙에 개정 규칙의 시행일자(2024. 11. 23.)를 일치시킴으로써 법적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1) 제5조(수수료)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.